

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7월 일

발 의 자 : 임 회 도 의원

1. 제안이유

가. 알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고,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표현 및 명백한 오타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문을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본문에서 인용되는 '의회'와 '법'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함 (안 제2조제1항, 안 제4조의2제2항)

나. 법률 용어인 '통할'을 '총괄'로, 일본식 한자어인 '기타'를 순화된 표현인 '그 밖에'로 변경하는 등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, 명백한 오기('규칙」칙)를 수정함 (안 제3조제3항, 안 제4조의2, 안 제6조)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없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.

제3조제3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2항제2호 중 “법 제4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”를 “제2항 이외의”로, “대해”를 “대하여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「하남시의회 직제 규칙」 칙”을 “「하남시의회 직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(생략)</p> <p>제3조(사무국장) ①·②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 한다.</p> <p>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1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사무국장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③ ----- ----- <u>총괄</u> ----- -----.</p> <p>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1. (현행과 같음)</p>

<p>2. <u>법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</u> 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기타</u>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</p> <p>③ 정책지원관은 <u>제1항 내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</u> 일반적 사무에 <u>대해</u>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 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「<u>하 남시의회 직제 규칙</u>」칙으로 정 한다.</p>	<p>2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 <u>라 한다</u>) 제47조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</u> ----- --</p> <p>③ ----- <u>제2항 이외의</u> -- ----- ----- <u>대하여</u> ----- -----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시행규칙) ----- ----- ----- 「<u>하 남시의회 직제 규칙</u>」----- ---</p>
--	--